

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8. 9. 5.(금), 10:30
2. 장 소 :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송도균 부위원장
이경자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「(주)머니투데이방송」 (2008-28-117)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(주)머니투데이 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※ 변경사항

법인명	채널명	방송분야	
		변경 전	변경 후
(주)머니투데이방송	MoneyToday Network	영화	증권·재테크

2)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건(2008-28-118)

- 광진희 의안조정팀장의 보고를 받고,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대해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방법은 지난 8차회의에서 의결한 제출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함.

사. 보고사항

1) 「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」 제정에 관한 사항

- 서병조 융합정책관으로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분산된 법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, 실질적 방송통신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「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」 제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, 초기단계에 외국사례와 국내현실 및 방송·통신·언론 등 관련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,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함.

※ 주요내용

- 가. (제1장 총칙) 기존 ‘방송’과 ‘통신’의 개념을 통합하여 ‘방송통신’으로 확대하고, 방송통신콘텐츠, 방송통신설비·망·기자재 및 방송통신신서비스·사업자를 재정의하고, 방송통신관련 권익보호, 이용자 편익 증대 등 기본원칙 규정
- 나. (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) 방송통신산업 발전, 방송통신콘텐츠, 방송통신기술진흥, 이용자 보호, 방송의 공익성·공공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을 방통위가 수립하고, 경쟁활성화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등 규정
- 다. (제3장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) 방송통신관련 기술지도, 기술정보 관리, 연구기관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
- 라. (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) 방송발전기금과 통신사업자의 출연금, 주파수 할당대가, 전파사용료 등의 재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방

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,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

- 마. (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)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기술기준 및 표준화 관련내용을 방송통신으로 확대
- 바. (제6장 방송통신 재난관리) 전기통신기본법(통신재난관리) + 방송법(재난방송) 내용을 융합환경에 맞게 정비

2) 「전파법시행령」 개정추진에 관한 사항

- 차양신 전파기획관으로부터 개정 전파법 공포('08.6.13)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필요하며, 그 밖에 무선국 허가제도를 완화하고 무선종사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여 전파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「전파법시행령」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,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.

※ 주요내용

- 가. 주파수 할당 시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령상 주파수 할당공고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규정(안 제11조)
- 나. 주파수 이용권 양수·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수·임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사전승인 절차 마련(안 제17조)
- 다.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휴대용 무선국은 설치공사가 불필요하고 혼신 야기 가능성이 적은 간단한 무선국이므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간소화(안 제21조)
- 라.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방송국 등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·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(안 제36조)
- 마.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 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 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 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 확대(안 별표17, 18)
- 바.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 권한을 허가업무 처리기관에 위임하여 행정의 일관성 도모(안 제123조)

아. 기 타

1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9월 8일(월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(11:05)